

 안산대학교	<h2 style="margin: 0;">조기졸업운영규정</h2>	규정번호	3-4-35
		제정일자	2026.03.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조기졸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기졸업은 학생이 해당 학과의 정규 이수 학기보다 1개 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자격) ① 조기졸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제 2개학기, 3년제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취득학점과 조기졸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3. 조기졸업 지원시 매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자
4. 매 학기 16학점 이상 수강 신청 및 이수자

② 조기졸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제 3개학기, 3년제 5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매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자
4. 매 학기 16학점 이상 수강 신청 및 이수자

제4조(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제한한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는 다음 각목의 학과
 - 가. 간호학과
 - 나.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 다. 유아교육과
2. 편입, 유급, 재입학, 전과
3.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 1년제 과정, 계약학과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② 조기졸업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제한한다.

제5조(신청 및 승인) ① 조기졸업희망자는 조기졸업학기의 지정된 기간 내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대상자는 제3조제2항의 자격을 충족한 학생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포기) 조기졸업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평가 종료일 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적) 조기졸업신청자가 졸업사정에 의하여 조기졸업이 불가할 시에도 학적부상 졸업유보자가 되지 아니한다.

제8조(학위 미취득) ① 조기졸업 사정에 탈락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졸업학점을 취득한 후 조기졸업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잔여 학기에 최저 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기졸업탈락자는 졸업학기에 개설되는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잔여 학기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11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2항을 따른다.

제9조(졸업) ① 조기졸업자도 당해연도 일반 졸업예정자와 같이 졸업 사정한다.

② 조기졸업자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조기졸업자가 제3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학칙시행세칙 제45조에 의한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생부터 시행한다.